세종 한신더휴 리저브(행정중심복합도시 2-4생활권 H01블록) 입주자 모집공고

나릿재마을 5단지

※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,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2017.11.24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됩니다. ■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.12.14.입니다.(무주택기간, 나이, 자격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)

■ 청약통장(생애최초) 예치기준금액은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(주택의 종류 등)에 따른 주택의 전용면적 85㎡ 이하 금액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로 없이 신청가능하나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3호 청약통장 종류별 납입인정 금액 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등에 따라 청약순위가 달라지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을 확인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통장 종류별 납입인정 금액 기준 : 청약저축, 주택부금, 청약예금 : 최대 10만원 / 청약부금 : 최대 5만원 / 주택청약종합저축 : 최대 50만원

■ 「주택법」 제54조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7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 및 계약 체결 시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이며,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 세대에 세대원 전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■ 청약신청 시 「주택법」 제54조에 따른 주택소유 여부 확인 대상 세대에 세대원 전원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.

■ 본 아파트는 「주택법」 제39조에 따른 주택조합 공급대상 주택이 아닙니다.

■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1년이상 거주자(청약자 중 세종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청약자)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(청약자 중 세종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청약자)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(청약자 중 세종시 거주기간이 가장 긴 청약자)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 다만, 세종특별자치시 거주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2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3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4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5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6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7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8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9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0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1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2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3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4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5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7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8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39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40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41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원 전원은 청약신청이 제한됩니다.

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4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